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36

발의연월일: 2024. 8. 19.

발 의 자: 박지혜·김성환·위성곤

이건태 • 이소영 • 김정호

서영교 · 장철민 · 허성무

조인철 • 이광희 • 황명선

정진욱 • 허 영 • 김 윤

오세희 • 김영환 • 박해철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무역장벽이 현실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있음.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에너지사용량 중83.9%가 산업단지에서 사용되고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8.0%를 차지하고 있어, 산업단지의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.

지난 7월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, 이와 관련하여 산업단지내 태양광 에너지의 개발·이용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히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·옥상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 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 에너지의 보급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7항제5호의2 및 제45조의2제4항제8호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7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산업단지의 태양광 발전설비(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이용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확충에 관한 사항제45조의2제4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내 공장건축물의 지붕·옥 상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간에 대한 태양 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3조(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	제33조(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		
수립) ① ~ ⑥ (생 략)	수립) ① ~ ⑥ (현행과 같		
	<u>수</u>)		
⑦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	7		
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	,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5의2. 산업단지의 태양광 발전		
	설비(「신에너지 및 재생에		
	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		
	법」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		
	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		
	는 발전설비를 말한다. 이하		
	같다)의 확충에 관한 사항		
6. (생략)	6. (현행과 같음)		
⑧ ~ ① (생 략)	⑧ ~ ⒀ (현행과 같음)		
제45조의2(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	제45조의2(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		
업계획의 수립) ① ~ ③ (생	업계획의 수립) ① ~ ③ (현		
략)	행과 같음)		
④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	4		
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			
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			
함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			
계획(이하 "구조고도화사업계			

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관 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 한 같다.

1. ~ 8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9. (생략) ⑤ ~ ⑫ (생략)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8의2.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내 공장건축물의 지붕・옥상,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간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

- 9. (현행과 같음)
- ⑤ ~ ⑫ (현행과 같음)